

2025-08-27

(25-5362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정오

본 2025년 8월 26일자 통보문은 미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람한다.

신설, 재건설 및 변형 배출원의 성능 기준 및 기존 배출원에 대한 배출 지침: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 최종 규칙의 기한 연장

정정 사유:

<input type="checkbox"/>	오류로 배포된 통보
<input type="checkbox"/>	통보 과정의 사무적 오류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통보 조치/참조 문서의 사무적 오류
<input type="checkbox"/>	기타

내용:

환경보호청(EPA)은 2025년 8월 15일 연방관보(FR)에 고시된 문서([G/TBT/N/USA/1802/Rev.1/Add.2](#)로 통보됨)를 정정하고 있다. EPA는 (1) 기한 연장: 신설, 재건설 및 변형 배출원의 성능 기준 및 기존 배출원에 대한 배출 지침: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 임시 최종 규칙, (2) 통합 철강 제조시설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배출기준 및 (3) 코크스 오븐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배출기준: 푸싱, 웬칭, 배터리 스택 및 코크스 오븐 배터리 규칙에 대한 세 차례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기간 연장을 발표하는 문서를 확정했다. 이 문서가 고시된 후, EPA는 **석유, 천연가스 및 철강 규칙제정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연장 날짜에 의도치 않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으며, 이 조치를 통해 이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.**

발효일: 2025년 8월 22일.

90 연방관보(FR) 40975, 2025년 8월 22일; [연방규정집\(CFR\) 제 40 편 제 63 부](#):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5-08-22/html/2025-16152.htm>

<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5-08-22/pdf/2025-16152.pdf>

본 조치 및 [G/TBT/N/USA/1802/Rev.1](https://www.gpo.gov/fdsys/doc/2025-OCT-02/FR-2025-0162)로 통보된 기준 조치들은 EPA-HQ-OAR-2025-0162로 식별된다. Regulations.gov의 Docket 폴더는 <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EPA-HQ-OAR-2025-0162/document>에서 제공되며, 여기에서 관련 기본 문서, 보충 문서 및 수렴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 또한 전술한 문서들은 [Regulations.gov](https://www.regulations.gov)에서 Docket 번호를 검색해 액세스할 수 있다.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는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2025년 10월 2일 오후 4시까지 USA TBT 질의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 USA TBT 질의처에 접수된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EPA와 공유되며, 의견수렴기간 동안 접수된 경우 Regulations.gov의 [Docket](#)에 제출된다.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USA/25_05609_00_e.pdf
